

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

의 안 번 호	5-147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국가보훈기본법(법률 제7572호)」 제정·공포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·복지·관련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우 및 지원대상(안 제3조)

나. 시민의 책무(안 제4조)

다.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(안 제5조)

라. 단체 예산지원(안 제6조)

-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, 단체운영 및 시설비
- 호국·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
- 자원봉사 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
마. 보훈복지(안 제7조)

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, 위탁
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주차료의 면제
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4. “단체”라 함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보훈복지”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(이하 “시”라

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.

제4조(시민의 책무) 모든 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동두천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
4. “호국·보훈의 달”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포상
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·재정적 지원
5.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·격려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비
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
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
제7조(보훈복지 등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·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·위탁

2. 시가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주차료 면제
3. 시가 직접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

제8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시장이 희생·공헌자에 대한 공헌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주민생활지원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 장 홍 현 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괄기획담당 손 덕 환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인 선 860-2211